

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[별표 3] <개정 2018. 12. 13.>

비문화재 확인표지(제48조제2항 후단 관련)

3cm	No.
	비문화재 확인(국외 반출 가능) APPROVED FOR EXPORT
	문화재청(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)
	() 공항·항만 문화재 감정위원 (서명 또는 인)
	문화재 감정위원 (서명 또는 인)
	문 화 재 청 장 직인
	(ADMINISTRATOR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)
	8cm